

“재조달가액부담 특별약관”

윤 동 혁

〈본 협회 보험1부 차장〉

1. 머리말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소홀함없이 고려해야 할 수백가지 발생가능 상황중 하나인 화재 역시 항상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화재 발생에 대비키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 100% 보상받는 것이 기업경영의 원칙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재보험만으로는 그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부분의 복구방법에 있어서, 그 대상자체가 건물이 되었던 기계가 되었던 화재발생 직전과 똑같은 상태로 복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특히 기계의 경우 그 많은 기계를 이전과 같은 상태의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시중에서 구하기란 더욱 더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업으로서는 새 기계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기업이 화재로 부터 피해를 받 는 간접손해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화재발생이후 원상복구기간까지의 기업을 경영하지 못한 기업휴지손해와 둘째, 새기계를 구입하기위한 비용이다. 다시말하면 보험가입을 전액보험으로하였을 경우 손해의 직접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공장을 가동치 못하여 생긴 간접 영업손실은 보상이 불가능하며, 중고품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의 기계는 새 기계

로 대체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것이 새 기계와 중고품기계와의 차액이며, 이차액을 간접손해 아닌 간접손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2. 신가보험과 기업휴지보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손해에 대한 100% 보상방법 중에는 기업휴지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업휴지보험과 새 기계 구입을 위한 신가보험(재조달가액부담 특별약관)이 있으나 이번에는 신가보험에 대한 것만 설명하기로 한다.

신가보험이란 재조달가액보험을 말하며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적용물건

- (1) 건물
- (2) 시설 및 기계장치

나. 요율

이 특약에 대한 요율은 보험의 목적에 적용할 화재보험요율로 한다.

다른 특약은 통상적으로 추가담보에 의한 할증률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신가보험에는 할증률이 없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추가되는 것에 대하여 화재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 약관의 종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다소 내용이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후첨 약관비교표 참조-

라. 적용범위(규제사항)

① 국문약관에서의 규제사항이 특약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은 경년감가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감가율이 30%를 초과하고 구조급별이 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특약요율 적용대상 물건에서 제외한다

② 영문약관에서의 규제사항이 규제사항이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는 없음.

마.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때;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재조달가액}}$$

바. 유의사항

국문·영문 공히 보험의 목적물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가 완료할 때 까지는 재조달 가액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3. 신가보험의 활성화 방안

보험의 일반원칙중에는 부당이득 금지와 역선택(자기선택 또는 반대선택)방지라는 것이 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손해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과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선택적으로 택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다. 신가보험에서의 경년감가율과 수용 장소에 따른 이같은 인수제한의 규제는 부당하다고 보며 이러한 요인이 보험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본다.

첫째, 경년감가율 50%초과 물건에 대한 인수제한의 부당성.

신가보험의 경우 가입당시 건물이나 기계의 중고값과 신가와외 차액간엔 어차피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으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역선택의 위험은 없다고 본다.



둘째, 수용장소 규제부당(3,4급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기계가 감가율의 30%초과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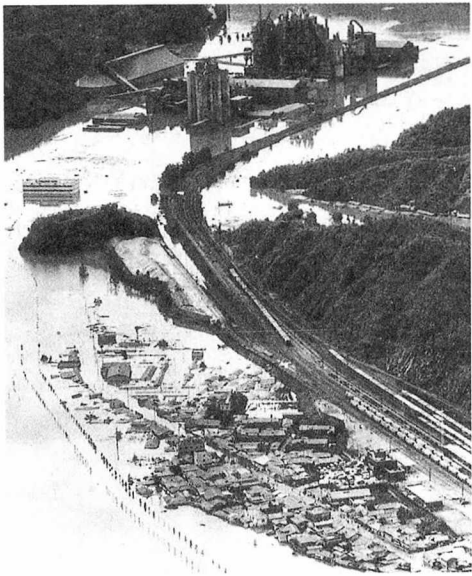
실제 공장에 있어서 기계는 그 종류와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이며 이를 수용장소별, 감가율별로 구분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당이득이나 역선택의 위험은 없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가보험이 새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감가율이 50%를 상회한다고 해도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역선택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부당성이 내재되어 있는 한 이 보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규제가 하루빨리 완화된 채로 보험계약자가 편리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겠다. ☹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비교>

제조달가액부담 특별약관(국문)		Replacement Cost clause(영문약관번역문) (제조달가액특별약관) <Building(s) and Equipment> (건물및 시설장비)
1. 손해의 보상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제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1. 이 특약이 첨부된 증권의 제조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기 증권의 각 조항중 “시가”라고 하는 문구는 모두 “제조달가액 (감가상각비 공제 없음)”으로 수정 사용하기로 합니다.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적용 대상	<p>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에 한합니다.</p> <p>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소모성 집기비품, 가재도구, 교본, 서화, 골동품, 조각돌,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p>	<p>2. 이 특약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타인의 재산, 가재도구 또는 피보험자의 주거용 건물내에 있는 주거용 물건과 교본, 서화, 교직물, 조상, 대리석, 조각돌, 청동고기, 희귀서적, 고대은제품, 도기류, 희귀성초자품, 골동품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품, 희귀품 또는 고대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3. 부분된 건축물의 보험금액이 재조달 가액의 80%에 해당 또는 초과하는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발굴물, 지하가스관, 지하전선과 배수관, 벽돌, 초석 및 콘크리트기초, 파열, 기타 지표하의 지주물의 가액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합니다.</p>
3. 보험 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p>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 하여야 합니다.</p> <p>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p> <p>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 가액기준 손해액 전액</p> <p>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 보다 적을 때 :</p> $\text{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재조달가액}}$ <p>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p>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13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p>	 <p>5. 회사는 보험의 목적물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가 완료할 때 까지는 재조달 가액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수리 또는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하되 손실발생후 180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하는 조건</p>

	<p>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p>	<p>으로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6. 이 특약에 의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p> <p>가.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금액</p> <p>나. 동일한 구내에 위치하고 피해재산과 점유 및 용도가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 가액</p> <p>다.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p>
<p>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p> <p>5. 분담조항</p> <p>6. 준용규정</p>	<p>회사는 보통약관 4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p> <p>①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p> <p>② 피보험자가 과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p> <p>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보험계약에서 이 특별약관 담보내용의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② 보험의 목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상기 각 조항을 적용합니다.</p> <p>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p>	<p>4. 회사는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다만,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나. 피보험자가 과손된 보험의 목적물(건물 또는 구축물은 통일구내상)을 지체없이 수리 또는 복구하지 않거나 수리 또는 복구할 때 까지의 손해</p> <p>7. 분담보상조항</p> <p>이 특약이 적용되는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보험계약에서 이 특약의 담보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부나 다른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금 수취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 이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8. 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목적물이 2개이사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상기 각조항을 적용합니다.</p>